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국 세무1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0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2조)
- 나.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유공납세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4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방세’,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유공납세자 대상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이면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서면 안내에 대해 규정하고

-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 안 제4조에서는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함. (타 자치구 사례는 붙임2 참조)
 - 안 제5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유공납세자의 명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실 지방세 납부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타 자치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부. 끝.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타 자치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조례 제정	규칙 제정	조례제정 시 기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중 구	○	○	2014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2	용 산 구	○	○	2020년	개인 : 2백만원이상 법인 : 5백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3	광 진 구	○	○	2015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4	중 랑 구	○	○	2022년	개인 : 2백만원이상 법인 : 5백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5	노 원 구	○	○	2017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6	서대문구	○	○	2019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7	구 로 구	○	○	2017년	개인 : 5백만원이상 법인 : 3천만원이상	세무조사 1년 면제
8	영등포구	○	○	2018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3년 면제
9	동 작 구	○	○	2017년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0만원이내 상품권
10	서 초 구	○	○	2017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서초수련원, 휴양소 이용 주차요금 1년 면제
11	강 남 구	○	○	2020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2	송 파 구	○	○	2016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13	강 동 구	○	○	2021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4	동대문구	○	×	2018년		세무조사 1년 면제
15	도 봉 구	○	×	2021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
16	양 천 구	○	×	2015년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3천만원이상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 1년 면제